

## ■ 목 차 ■

### ■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

-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 자문업무 개시.....1
- 지평지성 중국 상해에서 열린 '한국 거래 중국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컨설팅'에 참석.....3
- 정철 변호사, 미얀마 투자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설명회에 발제자로 참석.....4

### ■ 해외업무 사례 ■

- 한국 안전벨트 압체를 대리하여 중국 상해시 소재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및 기술계약 체결 관련 자문.....5
- 중국 병원법인과의 의료자문 및 서비스계약 관련 자문.....5
- 중국 무석시 소재 전자제품제조기업 매각 관련 자문.....6
- 중국 강소성 소재 유업생산법인과의 합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6
- 한국 석유화학기업 베트남 농약제조회사 지분 양수 자문.....7
-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부동산 프로젝트 자문.....8
- 캄보디아 유선통신회사 인수 자문.....8
- 한국 기업의 사업환경개선을 위한 보고서 – 라오스 편 집필 자문.....9
-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국내 수입 인허가에 관한 자문 제공.....10
-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판매점 및 머천트 서비스 계약에 관한 자문 제공.....10
- 필리핀 호텔 지분매각 자문.....11
- 필리핀 대규모광산 개발사업 자문.....11
- 미얀마 농업 투자계약 자문.....12
- 미얀마 외국인투자 형태 전환 및 신규 외국인투자회사 설립절차 자문.....13
- 태국 진출 자문.....14
- 공장 부지에 대한 분쟁 관련 자문.....14

### ■ 해외업무 논단 ■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QFII의 투자한도 500억 달러 인상.....15
- 베트남에서 상표의 광고 활용 방법.....17
- 국영기업법상 국영기업의 공모 및 상장 가능 여부.....19
- 러시아 건설업 면허 제도에 대한 고찰.....24
- 형해화된 개정안 30일 이내 일용직 파견 원칙 금지.....30
-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3).....32
- 산림법 위헌결정을 통해 바라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36

•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차명투자의 외국인투자회사 전환 절차.....	38
• 태국의 외국인투자법(외국인사업법)의 검토.....	40

## ■ 최신 해외정보 ■

• 중국 형사 소송법 대폭 개정, 총칙에 인권 존중 및 보장 내용 추가.....	44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개인의 외국상장회사 스톡옵션 참여 제한 완화.....	44
• 5월 1일부터 「특허 강제허가 방법」 개정안 시행.....	45
• 베트남 부동산과 유통 시장에 확대 투자하는 일본 자본.....	47
• 훈센 총리 경제적 양여권 수여 면적 축소 검토 지시.....	49
•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 면허 발급 중지.....	49
• 프놈펜 공공교통수단 사업에 대한 실사 실시.....	50
• 러시아연방 지역개발부, 2012년 2분기 러시아연방 주(州)별 평균주택공시지가 발표.....	51
• 2012년 4월 25일 실시협약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일부 개정.....	51
• 2013-2015년도 러시아연방 정부 조세정책 기본 방향 발표.....	52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2030 러시아 경제발전 시나리오 발표.....	52
• 러시아 법인 납세자등기부 기록 인터넷 수령 가능.....	53
• 싱가풀과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53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54
• 개정 노동자 파견법 통과, 30일 이내인 일용직 파견은 원칙 금지.....	54
• 도시바, 히타치, 소니 통합회사, 유기EL 패널 진출. 스마트폰용, 삼성 추격.....	54
• 미에현(三重県)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가동 예정.....	55
•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M&A, 11년도 2배 7조 엔 규모 넘어.....	55
• 경상수지 2개월 만에 흑자, 2월 1조 1,778억 엔.....	56
• 원전 가동률, 2011년도에는 최저인 23.7%.....	56
• 기업의 외채발행 급물살, M&A 자금 조달 1~3월.....	56
• 가메다(亀田)제과, 농심과 제휴.....	57
• 한국계 해운 회사인 썬스타라인, 가나자와(金沢)에 영업소 개설.....	57
• 브라질 재활산업 시장 최근 10년간 5배 성장.....	58
• 브라질 정부, 향후 대도시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에 20조 투자 예정.....	58
• 이만국의 도착비자 및 비즈니스비자 관련 Policy 동향.....	59
• 외국인의 광산지분 처분방법에 관한 법령 공포.....	60
• 미안미에 대한 전세계적 제재 완화 흐름.....	62
•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64
•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 유지.....	64
• ACCC, 탄소세 관련 Guideline 공표.....	65

- 호주 인수 분쟁 조정위, 재원 마련 위한 신주 발행시 주의 경고 ..... 65

## ■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 ■

- [제850호 – 필리핀]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 ..... 66
- [제851호 – 미얀마] 외국인 투자 늘어나는 미얀마 ..... 66
- [제852호 – 태국] 아세아 진출의 관문 태국 ..... 67
- [제854호 – 인도네시아] 외국인 광산 소유 제한하는 인도네시아 ..... 67
- [제855호 – 베트남] 노조 설립 활발한 베트남 기업 ..... 68
- [제856호 – 미얀마]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 69
- [제857호 – 러시아] 러시아 대륙붕 자원 개발, 닫힌 문 다시 열리나 ..... 70

## ■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

###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 자문업무 개시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현지에서 자문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16일 유정훈 한국변호사를 양곤에 파견하여 미얀마 제휴로펌 NK Legal 등과 함께 법률자문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은 본사 미얀마팀이 서울에서, 유정훈 변호사가 현지에서 법률자문 및 투자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미얀마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 법제가 불명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지평지성이 서울과 현지에서 동시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얀마 진출을 추진 중인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컨택]

- 미얀마 : 유정훈 변호사([yoojh@jipyong.com](mailto:yoojh@jipyong.com))
- 한국 : 정철 변호사([cjeong@jipyong.com](mailto:cjeong@jipyong.com)) | 강율리 변호사([ylkang@jipyong.com](mailto:ylkang@jipyong.com))

## [지평지성 미얀마팀]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 ■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

### 지평지성, 중국 상해에서 열린 '한국 거래 중국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컨설팅'에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5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공동 주최로 중국 상해에서 열린 '한국 거래 중국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컨설팅'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거래 해외 기업을 위한 법률 지원 컨설팅' 프로젝트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양영태 대표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정철 변호사



경염동 중국변호사

## ■ Global Business Center 소식 ■

### 정철 변호사, 미얀마 투자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설명회에 발제자로 참석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정철 변호사가 지난 4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미얀마 투자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설명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정철 변호사는 해당 세미나에 참석하여 「미얀마 투자진출 관련 기본 법제」에 관하여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 한국 안전벨트 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상해시 소재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 및 기술계약 체결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안전벨트 업체를 대리하여 중국 상해시 소재 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과 기술계약 체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이근동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 중국 병원법인과의 의료자문 및 서비스계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건강검진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중국 병원법인과의 의료자문과 서비스 계약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최홍화 중국변호사



부용 중국변호사

## 중국 무석시 소재 전자제품제조기업 매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무석시 소재 전자제품제조기업의 매각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최홍화 중국변호사



부용 중국변호사

## 중국 강소성 소재 유업생산법인과의 합자회사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개인을 대리하여 중국 강소성 소재 유업생산법인과의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최홍화 중국변호사



부용 중국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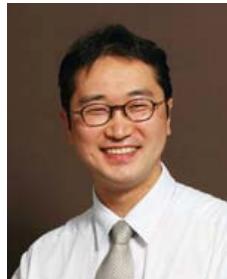
##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 한국 석유화학기업 베트남 농약제조회사 지분 양수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석유화학기업을 대리하여, 베트남의 농약 제조업체 지분 양수 건을 위한 지분양수도계약 및 투자허가 등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벼농사 등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경제구조에 비추어 볼 때 농약 제조업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 ■ 해외업무 사례 – 캄보디아 ■

###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부동산 프로젝트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캄보디아 내 콘도미니엄 투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 캄보디아 유선통신회사 인수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의 통신회사를 대리하여 현지 통신회사 인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 ■ 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

### 한국 기업의 사업환경개선을 위한 보고서 – 라오스편 집필 자문

지평지성은 대한상공회의소가 2012년 3월 자로 발간한 『우리기업의 사업환경개선을 위한 보고서 – 라오스편』 집필에 참여하여, 라오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라오스 사무소장

## ■ 해외업무 사례 – 일본 ■

###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국내 수입 인허가에 관한 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한국 국내 수입 인허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신민 변호사



김도요 변호사

###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판매점 및 머천트 서비스 계약에 관한 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한국 기업과의 사이에서 판매점 계약 및 머천트 서비스 계약 체결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이병주 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필리핀 ■

## 필리핀 호텔 지분매각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회사를 대리하여 필리핀 호텔 지분매각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 필리핀 대규모광산 개발사업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컨소시엄을 대리하여 필리핀 대규모광산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이민경 변호사

## ■ 해외업무 사례 – 미얀마 ■

### 미얀마 농업 투자계약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업체를 대리하여 미얀마 내에서 농업에 투자하는 거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 미얀마 외국인투자 형태 전환 및 신규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절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 내에서의 외국인투자 형태 전환 및 이와 관련된 신규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정철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 ■ 해외업무 사례 – 태국 ■

### 태국 진출 자문

지평지성은 건설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을 대리하여 태국 진출 계획 수립, 제반 관련 법률 검토, 적합한 사업체 설립, 제반 안전 장치 설정, BOI 투자 혜택 신청, 필요한 인허가 신청 등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김상준 변호사



정철 변호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 공장 부지에 대한 분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회사를 대리하여 BOI 등록 전 임차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복합적 내용의 계약과 관련된 태국 기업과의 분쟁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재형 변호사  
태국 사무소장



김상준 변호사



정철 변호사

##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QFII의 투자한도 500억 달러 인상



(법무법인 지평지성 경영동 중국변호사)

지난 4월 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이하 'QFII')의 투자액 한도를 500억 달러 인상하여 800억 달러로 책정하고, 동시에 RQFII의 인민폐 투자한도도 500억 위엔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2002년에 공동으로 「적격역외기관 투자자역내증권투자관리잠정방법」을 제정하여 QFII 투자제도를 시험 운행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시험 운행 경험을 토대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QFII 역내 증권투자 관리방법」을 공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에 제2차 중·미 전략경제 대화 후 QFII의 한도를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QFII는 23개 국가와 지역의 158개 기관으로 그 중 자산관리공사가 82곳, 보험회사 11곳, 국부펀드, 연금, 기부기금 등 기관 29곳, 상업은행 23곳, 증권회사 13곳으로 3월 23일 기준으로 QFII 계좌의 총자산 규모는 2,656억 위엔에 달합니다.

그 밖에 2011년 12월 16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등은 연합으로 「펀드운영회사, 증권회사의 인민폐 적격역외기관투자자 역내 증권투자 시점방법」을 발표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펀드운영회사, 증권회사의 홍콩자회사를 시험운영기관으로 확정하여 해당 회사가 홍콩에서 모집한 인민폐자금을 승인 한도 내에서 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승인을 받은 RQFII 기관은 21곳이며, 인허가를 받은 투자규모는 200억 위엔에 달합니다.

QFII 투자한도 인상은 중국 국내자본시장의 개방 범위의 확대로 풀이되어 A주식시장의 대외개방 행보를 가속화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현재 A주식시장의 운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QFII의 투자한도 인상은 국제적으로 성숙된 경험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개입에 힘입어 A주식시장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QFII의 인민폐 투자 규모 확대는 궁극적으로 인민폐의 국제화와 화폐, 이자율 등 금융정책 개혁의 추진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RQFII의 투자한도를 500억 위엔 인상한 목적은 홍콩의 인민폐 자금을 활성화하여 중국 A주식시장에 대한 간접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있습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상하여 시험 운행규모와 기관범위 및 투자비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 베트남에서 상표의 광고 활용 방법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이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한 지도 꽤 오래되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여러 계열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계열회사들이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리조직을 통일시키고 인적 · 물적 네트워킹과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의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먼저 베트남에 진출하여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인 계열회사나 동일 기업집단의 특정 브랜드, 로고 기타 상표를 여러 계열회사들의 광고나 영업 활동에 활용하는 것도 계열회사들의 동반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상표를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 지식재산권 사무국(National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에 상표를 등록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매체 등을 통한 광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의 문화정보국(Department of Cultur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으로부터 광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서류 중에는 상표(trademark), 상호(brand name), 로고(logo)의 등록증도 포함됩니다(호치민시의 경우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2009년 6월 5일 제정한 Decision 39 제9조에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정부가 유사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광고에 상표, 상호, 로고를 표출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상표, 상호, 로고의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상표 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국가가 이와 같이 상표의 등록을 강제하지도 않으므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상표 등록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국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사후적으로 사법기관이 상표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만, 베트남은 정부기관이 국민들의 생활을 이끌어가는 행정국가 경향이 강하여서 상표 침해 여부를 광고 허가 단계에서 미리 심사, 확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문제는 베트남 지식재산권 사무국에 상표를 등록하는 데에 행정 실무상 약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입니다. 더욱이 호치민시 문화정보국의 경우 타인의 상표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 등록증을 요구하고 상표 등록의 출원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이는 다른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도 유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1년여에 걸쳐 상표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해당 상표를 광고에 표출 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광고 허가 신청 시 상표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상표를 광고에 표출 또는 이용할 경우 베트남화 1천만 동(약 50만 원) 내지 2천만 동(약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광고의 중단 및 광고물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0년 7월 12일자 Decree 75 제30.5조).

한편 상표 등록증 외에도 광고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Application) : 표준 양식 사용
- 투자허가서 사본(Copy of Investment Certificate)
- 제품 품질인증서 사본(Copy of certificate of product quality)
- 광고물 모형(Mock up of advertising products)
- 광고대행사 계약(Contract for hiring advertising company) : 있는 경우에 한함
- 광고 매체 계약(Contract for hiring means of advertising) : 있는 경우에 한함

## ■ 해외업무 논단 – 캄보디아 ■

### 국영기업법상 국영기업의 공모 및 상장 가능 여부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정훈 변호사)

이미 여러 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2012년 4월 18일 캄보디아 증권거래소 (Cambodia Securities Exchange, CSX)에 프놈펜수도청(Phnom Penh Water Supply, PPWSA)이 1호로 상장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상장의 주관사인 동양증권캄보디아를 대리하여 2010년 중순부터 상장업무를 자문해 본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본건은 캄보디아에서 최초 상장이라는 점,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가 아닌 국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의 상장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되었던 1) 국영기업법상 국영기업의 공모 및 상장 가능 여부, 2) 주식양도성의 제한에 대한 문제, 3) 국유자산의 소유권 문제, 4) 액면미달 발행 및 감자 문제, 5) 민간 주주(Public Shareholders)의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상장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 해결방안, 남겨진 숙제 등에 대하여 4회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 국영기업법상 국영기업의 공모 및 상장 가능 여부

##### 1. 문제의 소재

캄보디아 증권거래법(Law on the Issuance and Trading of Non-Government Securities)에 따르면 캄보디아 기업법(Law on the Commercial Enterprise)상 Public Limited Company<sup>1</sup> 또는 법령에 따라 정

<sup>1</sup>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함.

해진 Permitted Entity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이 아니면 공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6조).

한편, 프놈펜수도청은 프놈펜수도청 설립에 관한 총리령(이하 '총리령 제52호')에 따라 1996년 설립된 이후부터 상장 이전에까지 기업법이 아닌 캄보디아 국영기업법(Law on the General Statutes of Public Enterprise)상 Public Institution with Economic Characteristic(이하 "Public Institution") 형태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Public Institution은 정부의 출연금이 있을 뿐 주식 발행을 전제로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자본금, 지분 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법상 Public Institution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일반에 공모하여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을 위하여 프놈펜수도청을 Public Limited Company로 전환하거나('Public Limited Company로 전환하는 방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식발행이 가능한 특수법인화 한 후 공모가 가능한 Permitted Entity로 지정하고 특별법에 기업법상 Public Limited Company의 주식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Permitted Entity로 지정하는 방안')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2. 본 상장에서의 실제 해결

이에 대하여 캄보디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Cambodia, 이하 "SECC")는 Permitted Entity로 지정하는 방안을 일정 부분 변형한 형태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영기업법시행령(이하 '총리령 제41호')를 개정하는 국영기업법시행령에 대한 개정령(이하 '총리령 제71')를 공표하였는데, 위 총리령 제71조에 의하면 국영기업이 주식을 일반에 발행하기 위하여는 감독부처와 재정경제부의 제안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업규칙

및 상업등록에 대한 법률(이하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무부<sup>2</sup>에 등록할 수 있으며(동 총리령 제4조), 이와 같은 사전승인을 받고 상무부에 등록된 국영기업은 공모 및 상장을 위하여 SECC에 공모 및 상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동 총리령 제5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SECC의 해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상무부에 등록된 국영기업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Disclosure Document(대한민국의 증권신고서에 해당함)를 제출하여 SECC로부터 공모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법상 Permitted Entity로 인정되어 공모가 가능하고 CSX의 승인을 거쳐 상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장된 국영기업은 상장 국영기업(Listed Public Enterprise)로서 국영기업법상 국영기업과 다른 별도의 조직형태라고 합니다.

또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로의 실질적인 전환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프놈펜수도청의 정관에 캄보디아 기업법상 Public Limited Company 규정을 차용하여 규정하거나 주식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상장된 국영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상장 국영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령(Prakas on Corporate Governance for Listed Public Enterprise)에 따라 상장 후 6개월 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18개월 이내에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상 요구사항을 갖추면 된다는 유예규정(동 부령 제51조 참조)을 두어 지배구조의 불일치 또는 요건 불충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3. 향후 과제

그러나 이와 같은 캄보디아 정부의 해결방식은 법률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률적 위계질서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 방안에 의하면 프놈펜수도청을 Public Institution으로 규정한 국영기업법 및 설립 근거령인 총리령 제52호를 그대로 둔 채, 그 하위이거나

<sup>2</sup> Ministry of Commerce로 캄보디아에서 기업 등록업무를 담당합니다.

동순위 법령인 총리령 제7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기업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공모 및 상장 가능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하여, 실제 프놈펜수도청의 국영기업법상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단지 정관 수정을 통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게다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도 국영기업법 등 상위규정은 그대로 두고 어떠한 입법위임도 없이 부령 형태로 제정된 상장국영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령에 국영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법률적 위계질서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법률적 위계질서상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국영기업법상 조직형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영기업법은 국영기업의 조직형태로, Public Institution, State Company와 Joint Venture Company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Public Institution은 정부의 출연을 기반으로 한 정부조직에 가까운 형태이므로, 일반에 주식을 공모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Public Institution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State Company는 국가가 자본금을 전부 출자한 기업을 의미하므로(국영기업법 제30조) 개념상 주식이 공모된 국영기업법상 조직형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영기업법상 Joint Venture Company는 정부가 총 자본금 혹은 의결권의 51%를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로서 일반의 지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국영기업법 제37조)에서 주식을 공모한 국영기업을 일용 Joint Venture Company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 주주와 정부 등 공공 주주간 합작회사의 설립에 대한 합의 등이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도 어색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SECC 등 캄보디아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지 않지만 상장된 국영기업은 국영기업법상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조직형태로서 “상장국영기업(Listed Public Entity)”에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영기업의 형태를 위 세가지 조직 형태로 제한한 국영기업법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해석 역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영기업법을 개정하여 상장을 위하여 국영기업이 조직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주식을 발행 공모하는 국영기업을 위한 특별규정을 법률로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상장일정에 쫓겨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법적 정합성

을 갖추지 못한 면이 있는 듯 보입니다. 라오스가 상장일정에 쫓겨 법이 아닌 총리령을 근거로 자본시장을 개설한 이후 증권거래법을 신규로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에서도 추후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 · 중앙아시아 ■

### 러시아 건설업 면허 제도에 대한 고찰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러시아 부동산개발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거품이 일부 가라앉았으나 최근 실물경제회복과 함께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러시아 서부지역의 발전이 두드러집니다. 러시아정부의 인프라 시설 투자는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와 달리 러시아에는 한국 건설회사들의 진출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러시아 중요 도시개발 및 인프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러시아에서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인 건설업 면허 제도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건설업 면허 취득 주체

러시아 「도시개발법」(No. 190-FZ, 2004년 12월 29일 제정, 2011년 12월 6일 최근 개정) (이하 '도시 개발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 및 개인은 관련 자율규제협회에 가입 · 등록함으로써 (해당 법인 및 개인이 선택한 세부 업종에 따라) 건설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자율규제협회 가입이 가능하므로, 외국법인의 경우 러시아에 별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규제협회 가입을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외국법인은 러시아에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설립하는 현지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하나 기업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한회사는 이사회 등의 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어, 회사 의사결정 구조가 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 2. 건설업 면허 유효기간 및 지역 제한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는 기한의 제한 및 사업지역의 제한 없이 발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최대 5년 기간으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 면허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3. 건설업 면허의 종류 및 내용

도시개발법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만이 건설, 재건축, 대수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율규제협회에 가입·등록하여 건설업 면허(이하 '일반 건설업 등록증')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러시아 법령에서는 면허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 세부 업종의 목록을 정하고 있습니다.<sup>3</sup>

현재 시행 중인 러시아 지역개발부 명령 (이하 '명령')에 따르면 면허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 세부업종은 총 34종이고, 세부업종 하위분류에 속하는 공종은 총 292개에 이릅니다.

이들 292개 중 45개 공종(세부업종 분류로는 13종)은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독특한 건축(이하 '특별 건설업 등록증')"으로 분류되어 일반 건설업 면허 발급 기준과는 구분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독특한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sup>3</sup>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세부업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이라도 면허 없이 건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① 원자력 이용 시설(핵시설, 원자력 및 방사선 물질 보관소, 원자력폐기물 보관소 등)
- ② 관련 법률에 따른 수력 구조물
- ③ 관련 법률에 따른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통신 구조물
- ④ 전력 300kv를 초과하는 송배전 시설 및 송전선
- ⑤ 우주발사 관련 사회기반시설
- ⑥ 항공기 관련 사회기반시설
- ⑦ 철도 관련 사회기반시설
- ⑧ 지하철
- ⑨ 항구
- ⑩ 150Mw 용량을 초과하는 화력발전소
- ⑪ 관련 법률에서 위험산업시설로 정한 구조물
- ⑫ 높이 100m 초과
- ⑬ 폭 100m 초과
- ⑭ 기둥 20m 초과
- ⑮ 지표면으로부터 15m를 초과하는 지하 매립

그 중 ①~⑪은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건축물에, ⑫~⑮는 독특한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45개 공종(세부업종 분류로는 13종)을 포함하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독특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시설, 구조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규모를 고려하여 보상기금을 자율규제협회에 납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민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기술인력의 보유 및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산 보유 사실을 확인 받아 특별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건축물 및 해당 45개 공종(세부업종 분류로는 13종)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공종은 일반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 등록증 및 특별 건설업 등록증 취득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각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건설업 등록증 취득 요건 개요

##### (1) 일반 건설업 등록증

## 일반 건설업 등록증

법인 자본금 (유한회사 기준)	단일 건설 계약금액 (단위: 루블)	보상기금 또는 민사책임		인력 <sup>4</sup>	자산 보유 요건
		민사책임 책임보험 보상액 (단위 : 루블)	보상기금 최저 납입액 (단위: 루블)		
10,000 루블	10백만 이하	300,000	1,000,000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수자 3인 이상 관련 경력 3년 이상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수자 3인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60백만 이하	500,000	1,500,000		
	500백만 이하	1,000,000	3,000,000		
	30억 이하	2,000,000	6,000,000		
	100억 이하	3,000,000	9,000,000		
	100억 초과	10,000,000	30,000,000		

## (2) 특별 건설업 등록증

## 특별 건설업 등록증<sup>5</sup>

법인 자본금 (유한회사 기준)	단일 건설 계약금액 (단위: 루블)	보상기금 또는 민사책임		인력 <sup>6</sup>		자산 보유 요건
		민사책임 책임보험 보상액 (단위 : 루블)	보상기금 최저 납입액 (단위: 루블)	관리자	전문기술자	
10,000 루블	10백만 이하	300,000	1,000,000	2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관련 전공 전문가로 서 고등교육 이수자 5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sup>4</sup> 5년에 1회 이상 건설 분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sup>5</sup>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인력 요건이 다른 세부업종과 상이하므로 검토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sup>6</sup> 관리직, 전문기술자, 부서장들은 5년에 1회 이상 건설 분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60백만 이하	500,000	1,500,000	2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6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건설장비, 교통수단, 산업안전 보호장비, 측량계측
	500백만 이하	1,000,000	3,000,000	2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8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장비 일체 등을 소유 또는 적법 하게 보유 하여야 함
	30억 이하	2,000,000	6,000,000	3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12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100억 이하	3,000,000	9,000,000	3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14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100억 초과	10,000,000	30,000,000	3인 이상(대표이사, 이사, 기술사, 부장 등) 관련 전공 고등교육 이자, 건설 관련 경력 7년 이상	관련 전공 전문가로서 고등교육 이수자 15명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 5. 기존 건설업 면허의 효력 관련

2009년 12월 27일에 러시아 「개별업종 면허제도에 관한 연방법률」(No.128-FZ, 2001년 8월 8일 제정)<sup>7</sup> (이하 ‘면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러시아 지역개발부 산하 정부기관에서 건설업 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면허법 개정으로 정부에 의한 건설업 면허관리제도가 폐지되고 자율 규제협회에 의한 가입·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업에 관한 면허 발급이 중단되었고, 종전에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건설업 면허에 대해서도 면허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급받았고 건설업 면허의 기간이 남아있는 건설면허일지라도 면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sup>7</sup> 기존의 면허법을 대체하여 2011년 5월 4일 No.99-FZ 면허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일본 ■

### 형해화된 개정안, 30일 이내 일용직 파견 원칙 금지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일본 사회에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파견직 사원의 일방적인 해고와 불투명한 처우 문제 등은 사회 격차와 빈부 격차 문제가 확대될수록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2010년 4월에 제조업 파견과 등록형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정당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류되어 오다가, 이번 2012년 3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으로 수정되어, 일부에서는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에 '파견 노동자의 취업 조건 정비'라는 표현 대신 법률 명칭에 '파견노동자의 보호'라는 표현을 써서 '노동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용직 파견에 대해서는 고용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② 또한 동일 그룹 기업 내에 노동자를 파견할 경우에는 관계 파견처에 대한 파견 비율은 총 파견 노동 시간의 80%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③ 아직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파견 노동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였고,
- ④ 파견 회사에 대해서 파견 요금과 파견 노동자의 임금 차액이 파견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마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⑤ 그리고 파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파견처와 파견회사가 노력해야 할 의무로서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온 제조업 파견과 등록형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법 시행 1년 후에 노동정책심의회에서 검

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파견의 경우에 파견처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 고용 계약을 제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도 3년 후로 연기되어,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일용직 파견에 있어서도 30일 이내의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령자와 주부 등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요컨대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어도 파견 노동에 대한 규제는 크게 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론 잠재우기식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재해지역의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으며, 일본 경제 전체가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 전체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의 향상은 일본 경제 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노동자 파견법의 근본적인 개정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규제 강화를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일본 경제 회복과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를 시정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브라질 · 중남미 ■

### 브라질 외국인 투자 가이드(3)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 1. 브라질 해외법인 설립 시 자본금 송금 방법

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충분

브라질은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일단 브라질에 설립된 법인은 외국인 투자회사가 아닌 브라질 내국법인으로 보므로, 자본금 송금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어 있습니다. 외환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므로 중앙은행의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외환송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자본금 송금에 관한 최소한의 등록 절차는 필요합니다.

나. 브라질 중앙은행에 대한 온라인상의 등록 시기 및 절차

브라질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브라질 내로 자금이 유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브라질 중앙은행에 관련법(법률 제4131호, 법률 제11371호)이 정한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송금을 위한 등록은 중앙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앙은행에 마련된 온라인 시스템에 투자자가 직접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에는 SISBACEN (Sistema de Informações do Banco Central)이라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 외국인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는 SISBACEN에 직접 접속하여 자본금에 관한 사항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SISBACEN 내에는 외국인 직접투자(IED : Investimento Estrangeiro Direto)를 위한

별도의 전자등록 모듈(RDE : Registro Declaratório Eletrônico)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는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는 현지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자본금 송금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SISBACEN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기존 등록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 사용자로 접속 후 신설된 현지법인에 관한 정보(CADEMP : Cadastro de Empresas)를 시스템상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법인은 CADEMP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RED-IED 번호도 부여받게 됩니다.

자본금 등록의 절차는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통상 외국인 투자는 현지법인에 대해 출자약정을 하고, 이러한 약정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약정에 대하여 출자를 받게 되는 브라질 현지법인은 이러한 출자약정의 내용을 해당 출자약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SISBACEN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출자약정에 따라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 투자가 납입 후 30일 이내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등록을 하면 됩니다.

#### 다. 중앙은행 등록을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

신설법인의 자본금 출자약정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약정의 날짜, 출자약정 가액, 주식수, 법인의 순가치에 관한 정보, 거주자/비거주자 별 출자약정 금액, 각 비거주자 별 출자약정 금액, 보통주/우선주의 내용(주식회사 경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금 납입 등록을 위해서는 RDE-IED 번호, 출자약정 결정일, 납입 금액, 납입된 비거주자 주식 수(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우선주 구분), 납입일, 투자유형(단독/합작)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본금 납입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면 향후 해당 자본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을 거쳐 국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 2. 주재원의 비자 취득을 위한 요건 및 방법

### 가. 비자발급 요건

브라질에 주재할 현지 직원들의 비자취득은, 경영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와 경영 이외에 업무에 종사할 경우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종류에 따라 비자 종류, 발급 조건 및 비자 갱신 요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 나. 경영 관련 업무 종사 시

브라질에 주재할 직원이 현지 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이사 · 경영관리자 · 업무집행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법률 제6815호)'에 따라 영주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한편, 영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브라질 노동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고 (i) 1인당 USD 50,000을 투자하고, 2년 이내 신규 일자리 10개를 창출하거나, (ii) 1인당 USD 200,000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영주비자의 발급 조건에 따라 그 갱신 요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위 (i)의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2년 후 약속한 대로 신규 일자리 10개(여기서 신규일자리를 위한 근로자는 브라질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를 포함합니다)가 창출되고 근로계약 효력이 존속되면, 우선 영주비자의 1차 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갱신할 필요가 없는 영주비자가 발급됩니다. 한편, (ii)의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영주비자 신청 시 브라질 법무부에 등록된 직업 및 주소가 비자기간 만료 시까지(최장 5년) 유지되고 근로계약 또는 연장되면, 갱신이 필요 없는 영주비자가 발급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주소 이전은 가능하나 반드시 법무부에 이러한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영주비자 발급 조건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 창출 약속을 위반할 경우, 법인 대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발급된 영주비자의 갱신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 다. 경영 이외 관련 업무 종사 시

브라질에 주재할 직원이 현지 법인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영주비자가 아닌 임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으로 족하나, 이 또한 영주비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임시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 대학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 최소 9년 이상 교육 및 2년의 업무 경력, (ii) 대학교육을 요구하는 직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후 1년의 업무 경력, (iii) 학교 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 3년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임시취업비자의 갱신을 위해서는, 갱신 당시 근로계약이 유효해야 하는데 이러한 갱신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4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계속 존속할 경우, 임시취업비자는 영주비자로 변경 가능하게 됩니다.

## 라. 비자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비자 신청은 먼저 브라질 법인이 브라질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근로자가 주한 브라질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자 신청 시 별도의 인터뷰 절차는 없고,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데까지 통상 2~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영주비자의 경우, 여권, 예방주사 증명서(필요 시), 과거 무범죄 증명서, 주소 증명서, 출산 또는 결혼 증명서 및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임시비자의 경우에는 여권, 예방주사 증명서(필요 시), 건강증명서, 과거 무범죄 증명서 및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인도네시아 ■

### 산림법 위헌결정을 통해 바라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인도네시아도 지난 2003년 대한민국과 유사한 형태의 독립제 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래 법률의 위헌심사, 선거소송, 권한쟁의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2012년 2월 9일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 산림법(1999년 제41호, Forest Act) 제1조 제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위 결정이 소급효를 가지는가에 대해 조림(Plantation), 목재 및 천연자원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산림법 제1조 제3항은 산림법상 '산림지역(forest area)'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서, 만일 산림지역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이뤄진 산림지역 관련 후속 행정처분 모두 위헌결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여 내려진 산림지역 관련 후속 행정처분까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 주장대로 산림지역 지정처분 등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고, 정부의 적극적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법의 해석 및 실무 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법 제1조 제3항은 '산림지역(forest area)이란 산림보호를 위해 정부에 의해 영구 보존 산림으로 표시(indicated)되거나 또는 지정된(designated) 지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심판을 제기한 신청자들은 위 정의조항의 '표시되거나'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조치나 단계가 되면 영구 보존 산림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바, 예컨대 산림의 일부 구역에 간단한 표식으로 영구

보존 산림이라는 표시만 하게 되면 설사 일반인이 이러한 사실을 공보나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 공문서를 통해 산림지역임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산림지역으로 취급받게 되어 주변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더 이상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신청자들의 위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산림법 제1조 제3항 중 ‘표시되거나 또는’ 부분이 위헌이므로 위 규정에서 삭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 정부가 불명확한 산림지역 표시에 기초하여 내려진 산림지역 개발불허 등 후속 행정처분도 무효인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9조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 시점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범위까지 소급효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학계 및 실무쪽에서는 위헌결정 전 위헌법률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의 태도도 이와 유사한 바, 인도네시아 법원은 2009년 Antasari 사건에서 부패방지위원회(KPK) 소속 부패방지위원 등이 형사소추를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파면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위원회법 규정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헌심판을 신청한 2명의 부패방지위원에게는 위헌결정이 효력을 미치지만, 그 이전에 파면된 Antasari에 대해서까지 위헌결정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일부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판례법을 형성하였는바, 신속한 법적 구제와 현저한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문에서 소급효가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결정 이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은 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산림법에 관한 위헌결정에서는 동 결정에 소급효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동 위헌결정은 위헌결정 선고가 있는 2012년 2월 9일 이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는 바, 문제의 산림지역 정의조항을 토대로 종래 내려졌던 행정처분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미얀마 ■

###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차명투자의 외국인투자회사 전환 절차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철 변호사)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 이하 'MIC')는 2012년 2월 25일 미얀마 현지인의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자를 외국인투자법상의 정식 외국인투자로 전환하는 절차에 대한 행정명령(Order)을 공포하였습니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100% 자기 자본을 투자하거나, 미얀마 정부기업 또는 민간업체와 합작할 경우 3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현지인의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명투자 전환에 관한 행정명령은 이러한 전제에서 차명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를 100% 외국인 투자자나 현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합작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00% 외국인 투자자로 전환하는 절차에 관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신청 대상

- ① 실제 외국인이 사업의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현금의 100%를 투자하였지만 현지인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의 외국인 사업가, ② 현지인의 지분이나 투자가 없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 사업가, ③ 가장혼인한 미얀마인 배우자의 명의나 가장입양한 미얀마인 양자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사업가는 100% 외국인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전환신청시 제출서류

- ① 외국인 사업가의 신상정보, ② 운영사업의 허가서와 일반 정보, ③ 관련된 미얀마 현지인의 신상정보,
- ④ 최근 년도 사업보고서, ⑤ 운영사업의 세금완납증명서, ⑥ 외국인의 해당국가 대사관의 추천서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환신청시 심사 및 승인

MIC는 해당 외국인과 미얀마인이 블랙리스트에 있는지, 세금을 완납하였는지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의 성격·형태·적법성 등을 심사합니다. 이에 대한 승인이 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를 지불하여 기존 사업의 명목상 운영자로부터 매입해야 하고, 해당 사업은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한 운영이 허가됩니다.

사업에 현지인의 투자가 일정 부분 있는 경우 합작회사로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신청 절차와 심사과정 및 승인과정은 위와 유사합니다.

한편, 동 행정명령은 발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와 같은 전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5일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미얀마 내에서 차명으로 투자를 진행한 외국인들은 2012년 5월 25일까지 위 전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월 초까지도 MIC에 전환신청이 된 사례가 1건도 없다고 하는데, 다소 불명확한 전환절차 관련 규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진행된 사례가 없어 실무적인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차선책으로는 기존 사업내용을 청산하고, 신규로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 ■ 해외업무 논단 – 태국 ■

### 태국의 외국인투자법(외국인사업법)의 검토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재형 변호사 · 태국 사무소장)

#### 가. 외국인의 개념

태국의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1999년 외국인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FBA') 과 1977년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Act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외국환관리, 출입국, 수출과 수입, 증권거래와 같은 분야의 다양한 법령에 있으나 FBA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에 우선 이 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이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면 외국인은 태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태국 국적이 없는 자연인 또는 법적 주체를 의미하는데, 후자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주식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조합의 출자자의 50%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조합원 또는 관리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이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주식의 50% 미만을 소유하거나 출자자가 50% 미만이고 대표조합원 또는 관리자가 태국인이면 비외국인 즉 태국인으로 간주됩니다.

#### 나. 사업 영역과 규제

FBA는 사업 활동을 세 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주는 외국인이 특별한 이유로 금지되어 그 사업의 허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범주는 국가 안전보장, 예술, 문화, 관습, 전통 공업/수공예품 제조, 천연자원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상무부 장관이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서만 외국인사업허가 Foreign Business License FBL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40% 이상을 태국인이 소유하고 이사의 2/5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합니다. 상무부 장관은 각료회의를 거쳐 이 요건을 변경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태국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범주는 태국인이 아직 외국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사업위원회의 승인을 경유하여 국장의 FBL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FBL을 얻으면 외국인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100%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태국인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 다. 실태 및 권고

흔히 태국에 법인을 세울 경우 무조건 51:49의 주식 소유 구조가 필수적이라 하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태국은 제조업은 개방이 되어 있고 서비스업은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셋째 범주의 사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FBL을 얻으면 된다고 하나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FBL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규제가 없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할 수는 없고 50% 미만의 지분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셋째 범주는 마지막에 '기타 서비스업'이라는 일반 조항이 있기에 나열되지 않은 분야의 사업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분야에서 태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갖되 태국인이 과반 지분을 소유하는 구조를 통상 이용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주식과 자본금의 절반 미

만을 소유할 경우 합작회사의 경영권을 외국인 주주가 갖더라도 이는 FBA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인 주주가 형식적으로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도록 회사를 설립하면서 외국인 주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국인 대주주로부터 주식 포기 각서 또는 권리 포기 각서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각서는 FBA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FBA는 이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บาท에서 1백만 บาท 사이의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는 처벌과 영업중지명령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근 상무부는 외국인 지분이 40% 이상일 경우와 그 이하라도 외국인이 이사 선임권이 있는 경우 태국 투자자의 실질적인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태국 투자자의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식 포기 각서 수준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통상 이런 경우 회사법적인 구조를 활용하여 과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외국인 소수 주주가 효율적으로 경영권을 갖고 회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각각의 경우와 상황에 맞게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이한 이사 지명권을 갖는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
- 우선주 발행
- (주주간 자금 제공 및 그 상환 옵션 또는 상환 요구 옵션을 포함하는) 주주간 계약 체결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2/3와 같은 절대 다수 의결 요건 설정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2/3과 같은 절대 다수의 승인 요건 설정

태국에서 사업 또는 투자를 할 경우 법인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FBA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선 태국은 제도가 상당히 잘 확립되어

있고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매우 간략합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설립 절차를 보통은 하루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이 많았으나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투자 분야를 개방하여 지금은 제한 업종이 별로 없지만 과거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상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고시는 그 분량이 수십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각 산업 분야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업종에 따른 연도별 개방 계획을 명시하고 있었기에 상당히 복잡하였으나 태국의 FBA 별표는 매우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 라. 지사의 경우

태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한국 기업의 지사 형태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사는 애초에 태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FBA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사에 대해서도 FBA가 적용이 됩니다. 그 결과 특히 셋째 범주의 서비스업은 지사 형태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 중국 형사 소송법 대폭 개정, 총칙에 인권 존중 및 보장 내용 추가

지난 3월 14일,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은 1979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으며 1996년에 1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차 개정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100여 곳으로 개정 폭이 50% 이상에 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근절과 인권 보장을 동등하게 중요시한다는 원칙 하에 변호, 증거, 강제조치, 수사, 심판, 감독관리 등 내용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의 ‘임무와 기본원칙’에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리인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총칙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은 인권 보장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간 전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고문하여 취득한 강제 자백 내용에 따라 오심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법증거배제 원칙을 명시하고, 구속·체포·심문 절차 등을 보완하여 수사단계에서 고문으로 강제 자백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의 변호제도를 보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법원의 심리절차를 더욱 세분화하였습니다.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개인의 외국상장회사 스톡옵션 참여 제한 완화

지난 3월 16일, 중국 경내 개인이 외국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경내 개인의 외국 상장회사 스톡옵션 참여 외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앞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07년에 중국 경내 개인의 외국 상장회사 스톡옵션 참여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발표하였었습니다. 두 규정을 비교할 때, 이번 규정은 2007년의 규정보다 외환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일부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행가능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1) '스톡옵션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2) '중국 경내 회사'의 범위에 대표처, 외국 상장회사와 지분지배관계가 있거나 실제 지배관계가 있는 중국 경내 각 모회사, 자회사 또는 동업기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3) 스톡옵션 관련 「중국 경내 대리기구」의 범위에서 '노조'를 삭제하고, (4) 외환절차 상 기존의 '외국에 외화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제출서류를 많이 간소화하였습니다.

## 5월 1일부터 「특허 강제허가 방법」 개정안 시행

5월 1일부터 「특허 강제허가 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허 강제허가 방법」은 일찍 2003년에 제정되었는데 동 규정에 따르면, 국가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하여서는 국무원 주관부서에서 국가 지적재산국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강제실시 사유로 특히 공공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체에서 특허약품에 대한 강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의약품 등 사회공공이익과 관련되는 제품의 경우 가격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약품의 특허 강제허가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인 2005년에 「공공건강문제에 대한 특허 강제허가방법」이 제정되어 약물에 대한 강제허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시행 후 특허 약품에 대한 강제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복제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윤이 낮고 정부에서 특허 강제허가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특허 강제허가 방법」 개정안으로 해소가 될지, 약물에 대한 강제허가가 활성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 베트남 부동산과 유통 시장에 확대 투자하는 일본 자본

지난 4월 21일 도쿄에서는 제 4차 일본과 메콩지역국가(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5개국) 정상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3년간 이 지역에 8조 원대의 개발원조(ODA)를 약속했습니다.<sup>1</sup>

베트남 수상 Nguyen Tan Dung은 일본 정부의 개발원조를 환영하면서, 메콩강 유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광 개발과 육로와 해상 및 복합운송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베트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한 바 있습니다.<sup>2</sup>

2012년 1월 1일~3월 20일까지 베트남에 외국인신규투자금액은 22억 불이었고 그 자금의 대부분인 20억 불은 일본이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본 자본의 투자처는 원부자재와 설비를 들여와서 공장을 건설하고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과 유통업 직접 투자 및 M&A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자본의 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투자 경향성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는 현지 언론의 견해도 있고 이와 같은 투자 경향으로 언급되고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sup>3</sup>

일본계 유통회사 AEON은 베트남에 소매점 MiniStop을 확장해가면서 3.5헥타 규모의 쇼핑몰 개발계획과 함께 향후 10년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계 기업의 베트남 내수 시장의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기업의 지분취득과 인수합병 형태의 투자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용품 전문업체 유니참(Unicharm)은 1억 2천만 불에 상당하는 Diana Vietnam의 지분 95%를 취득했고 Kirin Holding은 베트남 음료시장의 선두기업인 Interfood Shareholding의 주식을 57%를 매입했고 Daio Paper는 Saigon Paper의 지분을 취득했으며 Ezaki Glico Group은 현지 식품회사 Kinh Do Group의 10%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 부동산은 일본 자본을 유인하는 매력적인 영역은 아니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 졌습니다. 호치민 시내 빌딩 Center Point는 일본계 펀드에게 매각되었습니다. Tokyu Corporation은 베트남 기업 Becamex IDC와 합작으로 호치민시 인근 빈증성 신도시 개발에 12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대베트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배경에는 고금리와 신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베트남 금융환경하에서 현지 기업들이 지분매각을 통해 경영상 활로를 모색하려는 경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규모 개발원조 정책과 엔화 강세에 힘입은 일본 기업들의 자본이 베트남을 발판으로 동남아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지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기사]

- <sup>1</sup> 일본, 메콩강 5개국에 8조3000억 원 개발원조 – 경향신문(2012. 4. 22.)  
일본, 메콩강 개발에 8조 원 지원...중국 진출에 대항 – 매일경제(2012. 4. 22.)
- <sup>2</sup> Vietnam supports Mekong-Japan cooperation – Vietnam Investment Review(2012. 4. 21.)
- <sup>3</sup> The new tendency in Japanese FDI in Vietnam – Vietnamnet(2012. 4. 19.)

##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 훈센 총리 경제적 양여권 수여 면적 축소 지시

2012년 4월 17일자 현지 신문인 Kampuchea Thmey Daily에 의하면, 훈센 총리는 개발하지 않고 있는 양여권을 취소할 것과 불법적인 벌목활동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더불어 2011년 12월 30일 민법발효에 따라 민법상 장기임대차의 최장 50년 규정과 토지법상 양여권의 99년 규정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훈센 수상의 지시가 있은 후 체결되는 양여권은 5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여 체결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장기임대차와 양여권은 법적으로 다른 토지사용권 부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훈센 총리가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앞으로 캄보디아 정부에서 양여권을 50년간만 실무적으로 인정해주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 면허 발급 중지

2012년 5월 2일자 캄보디아 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면, 캄보디아 우정통신부는 캄보디아에 너무 많은 이동통신업자들이 과당 경쟁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사업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동통신사업 면허를 신규로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관련 기사]

- No New Mobile Carriers, Government Announces - Cambodian Law Blog (2012. 5. 2.)

## 프놈펜 공공교통수단 사업에 대한 실사 실시

프놈펜 시청은 버스운행을 위한 공공교통망을 위한 계획을 위한 실사를 시스트라(Systra)에 의뢰하여 수행했습니다. 실사결과 프놈펜이 현재 인구 성장, 증가하는 이동성 및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전환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프놈펜 내 대중교통 도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PPWSA sets an IPO date – The phnom penh post (2012. 3. 1.)

##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중앙아시아 ■

### 러시아연방 지역개발부, 2012년 2분기 러시아연방 주(州)별 평균주택공시지가 발표

2012년 4월 11일 러시아연방 지역개발부 고시에 따르면 2012년 2분기 러시아연방 주별 평균주택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상승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평균주택공시지가는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수당 지급액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단위: 평방미터/루블

	2012년 1분기	2012년 2분기
모스크바시	81,400	85,500
모스크바주	44,250	44,250
칼루가주	33,450	35,400
상트 페테르부르크시	48,550	50,800
잉구쉐티야 공화국	20,050	21,100
첼랴бин스크주	26,400	29,050

### 2012년 4월 25일 실시협약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 일부 개정

2012년 4월 25일 No. 38-FZ '실시협약에 관한 러시아연방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시협약의 목적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투자 유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상품, 노동,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시설을 민간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들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실시협약의 변경, 해지(제) 절차 및 입찰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실시협약의 목적물 중 도로인프라와 관련된 시설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정

부로부터 국영기업인 러시아국영기업인 '러시아도로(한국의 도로공사에 해당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시행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3-2015년도 러시아연방 정부 조세정책 기본 방향 발표

러시아연방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회계연도 동안 러시아연방 정부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략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본방향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지원, 혁신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및 지원을 주요 세부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세(보유세) 도입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방향에 따르면,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고, 세금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장부상 공시지가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대상 부동산 범주에는 토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2030 러시아 경제발전 시나리오 발표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러시아 경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입안하였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에너지, 과학, 교육, 하이테크 및 기타 산업 부분에서의 비교 우위 확보 및 발전 수준, 노동생산성 증가, 교통·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정부시스템 효율화, 기업환경 촉진 제도 발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통합 등에 러시아 정부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혁신적으로 수행된다면 전제하에 2020년 러시아의 GDP는 유로존의 65~70% 수준(현재 48%)에 이를 것이고, 2030년에는 90~95%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중산층 비중은 현재 22%에서 2020년 37%, 2030년 4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법인 납세자등기부 기록 인터넷 수령 가능

러시아 연방 국세청은 2012년 2월 27일 통합국가납세자등기부 제공 절차에 관한 고시를 변경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청을 하였으나 이제는 공인인증서서(전자서명)을 보유한 신청인은 국세청 포털을 통해서도 납세자등기부등본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기간은 예전과 동일하게 5일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싱가폴과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

2010년 9월 27일 러시아와 싱가폴간에 체결된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이 러시아 상하원을 거쳐 2012년 5월 3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공포 되었습니다. 앞으로 싱가폴을 통한 투자의 경우에도 러시아 정부의 의한 수용이나 국유화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해외 보험 회사를 인수하기 쉽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안에 개정될 전망입니다. 이종업을 산하에 둔 해외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국내 보험회사와 은행, 해외 보험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회사와 자동차 수리 회사를 산하에 둔 해외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러한 해외 보험 회사의 주식 보유를 일정 기간 내에 인정하여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 노동자 파견법 통과, 30일 이내인 일용직 파견은 원칙 금지

파견 노동자의 대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개정 노동자 파견법이 28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고용 기간이 30일 이내인 일용직 파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파견 회사는 수수료 할인 공개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초 정부안을 수정하여 일이 있을 때만 고용 계약을 맺는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 파견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당초보다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 도시바, 히타치, 소니 통합회사, 유기EL 패널 진출. 스마트폰용, 삼성 추격

도시바(東芝),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소니 3사와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공동 출자한 중소형 액정 패널 회사, 재팬 디스플레이는 2일, 유기EL 패널 시장에 진출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2013년도에 스마트폰용 유기EL 패널의 양산에 들어갑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의 삼성 그룹을 추격할 방침입니다.

## 미에현(三重県)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가동 예정

하쿠토가 츠시(津市)에 보유한 약 4만 평의 유휴지에 캐내디언 솔라사의 태양 전지를 사용한 메가 솔라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 솔라 프로젝트 중에서 해외 기업이 참여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한 전기는 전량 전력회사에 판매하여 두 회사가 수익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캐내디언 솔라는 훗카이도 등 4~5개 곳에서도 출력 500~2천 kwh 규모의 메가 솔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량매입제도가 7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미쓰이 물산과 샤프 등 대기업이 연이어 메가 솔라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썬에디슨 등 해외 기업도 메가 솔라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건설 장소는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M&A, 11년도 2배 7조 엔 규모 넘어

11년도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 금액은 7조 3,264억 엔으로 전년대비 2배로 급증하여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했던 2008년도를 웃돌았습니다. 건수 면에 있어서도 474건으로 23%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맥주와 약품 등과 같은 내수 기업에 의한 대형 인수입니다. 내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엔화 강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나,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M&A에 대한 의욕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경상수지 2개월 만에 흑자, 2월 1조 1,778억 엔

재무성이 발표한 2월 국제수지상황에 따르면, 해외화의 종합적인 거래 상황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1조 1,778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흑자액이 30.7%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수지의 내역을 보면,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가 1,021억 엔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한 5조 247억 엔입니다. 중국의 춘절이 지나 하락세가 완화되었고 미국용으로는 자동차 수출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11.1% 증가한 5조 1,456억 엔으로 2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수입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여행과 수송 등의 동향을 나타내는 서비스 수지는 1,304억 엔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무역 서비스 수지는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여 비교 가능한 1985년 1월 이후 최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업이 해외 투자에서 얻는 이자와 배당 등을 나타내는 소득수지의 흑자는 3.9% 증가한 1조 2,430억 엔이었습니다.

## 원전 가동률, 2011년도에는 최저인 23.7%

전력회사와 기기 제조사로 구성된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도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가동률)은 23.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재가동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전력회사들은 안전공급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일본 국내 54기 중, 훗카이도 전력 도마리(泊)원전 3호기 1기뿐입니다. 이 원전은 5월 5일에 점검으로 정지될 예정입니다. 정부 등이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간사이(関西)전력의 오오이(大飯)원전 3, 4호기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일본 모든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 기업의 외채발행 급물살, M&A 자금 조달 1~3월

일본기업에 의한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1~3월의 발행액은 이미 작년 1년간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표시 발행도 증가하여, 올 한 해 동안 과거 최고였던 2010년 446억 달러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신용력 회복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있어 해외 기업의 M&A등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영미조사회사 딜 로직에 따르면 1~3월 외화표시채권의 발행액은 210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의 52%에 해당됩니다. 은행 및 보험, 자동차 대기업 등 해외에서의 사업 확대를 노린 발행이 눈에 띕니다.

## 가메다(亀田)제과, 농심과 제휴

일본의 가메다(亀田)제과는 한국의 식품 대기업인 농심과 상품 공동 개발 및 생산 기술을 공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가을 한국에서 공동 개발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아시아에 있는 상호 판매 경로를 활용한 영업 활동도 전개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농심과 관계를 강화하여 현재 수%에 지나지 않는 해외 판매액 비율을 2018년도까지 30%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 한국계 해운 회사인 썬스타라인, 가나자와(金沢)에 영업소 개설

가나자와(金沢)와 츠루가(敦賀) 두 곳의 항구와 한국의 부산항 등을 연결하는 화물선을 운항하고 있는 썬스타라인은 이번 5월 가나자와시에 영업소를 개설합니다. 썬스타라인은 한국 선박 회사인 팬스타의 자회사로 한국계 선박 회사가 일본 중부 지방에 영업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나고야 항구 등에서 수출하는 일본 중부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역 항구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여 화물 취급량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선박 회사는 화물 취급량이 많은 항구와 가까운 도쿄와 오사카 등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한국의 동해 쪽 항구에서는 각 항구의 하역 회사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브라질 · 중남미 ■

### 브라질 재활산업 시장 최근 10년간 5배 성장

요즘 브라질에서는 재활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에는 경미한 장애 수준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 수는 총인구의 23.9%에 해당되는 약 4,5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후천적 질병 · 총기사고 · 교통사고의 증가로 장애인을 위한 용품, 재활장비 및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기준 브라질의 장애인용품 및 서비스, 재활장비 시장 규모는 약 35억 헤알(2조 1,300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이 브라질 재활용품 시장은 2011년에 정부가 2014년까지 약 76억 헤알의 재원을 재활장비 및 용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연구, 제품 판매 · 유통 등을 지원할 것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는 적어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브라질 정부, 향후 대도시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에 20조 투자 예정

최근 브라질 대통령은 '대도시 이동성 향상 성장 촉진 프로그램'에 따라, 18개 주 51개 대도시의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철도 · 지하철 · 경전철(VLTs) · 버스 전용 차로 설치 등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에 320억 헤알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중 220억 헤알(약 13조 3,196억 원)은 연방정부가, 나머지 100억 헤알(약 6조 544억 원)은 주와 시 정부가 투자하게 됩니다. 브라질 정부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상파울루를 비롯한 대도시의 여객 및 화물철도시스템 등이 다른 국제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뒤처져 있고, 상파울루 시내에도 지하철과 국철 6개 노선이 운행되지만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브라질의 교통 인프라 시설 부족은 운송비를 증가시켜,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로 불리는 고물가 · 고비용 구조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인도네시아 ■

### 이민국의 도착비자 및 비즈니스비자 관련 Policy 동향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도착비자(Visas on Arrival)에 대한 새로운 Policy를 채택하였음을 밝혔는바, 도착비자의 용도는 관광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행 명문법령과 배치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도착비자를 소지하고도 관광 외에 사업관련 회의를 주최하거나 참석할 수 있고, 사업에 관련된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비즈니스 비자(Business Visa; 흔히 '방문비자'라고도 함)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민국 국장은 비록 새로운 Policy가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Policy는 현재 적용 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민국은 최근 비즈니스 비자(Business Visa)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방향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즉, 종래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교육, 세미나 등에 교육자, 강사 등 자격이나 역할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변경된 입장에 따르면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단수이든 복수이든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단기 교육과정을 수료할 수 있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나, 교육자나 강사의 역할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비자에 관한 새로운 실무 태도는 현행 법령에 배치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이민국이 현행 법령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봄이 좀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였다가 교육 또는 훈련을 제공한 방문자를 구류하였고, 해당 방문자의 비자 후원자(Sponsor)에게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목적의 대규모 세미나 등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강사나 연설자로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 경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시장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근로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또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교육적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민국의 도착비자 및 비즈니스 비자에 관한 최근의 엄격한 태도는 재고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이민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공항이나 항구가 어디냐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입장은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착비자를 활용할 외국인은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입국 심사 시에 방문 목적에 대해 편의상 또는 별 다른 고민 없이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외국인의 광산지분 처분방법에 관한 법령 공포

2012년 3월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Mine) 지분을 종래 100~80%(생산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 후 80%)까지 허용하던 것을 생산개시로부터 10년을 도과하는 시점부터 광산지분의 49%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고, 이로 인해 관련 업계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개정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 상위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이 위 개정법령에 따라 보유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위 법령은 대략적인 틀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언제쯤 하위 법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업계 관계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종래 2010년 정부령 제23호(GR 23)상 지분 처분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세부 이행법령을 공표하였습니다. 2010년 정부령 제23호는 외국인이 생산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을 도과하기 전까지 광산지분의 20%를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 그동안 이행법령이 제정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지분 처분이라는 면에서 동일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2012년 정부령 제24호(GR 24)에 따른 외국인 지분처분의 방법도 이번 에너지광물자원부 법령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처분 대상 지분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어야 하고, 주식시장에 공개된 외국인 보유주식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일정 요소를 고려하여 최초 주식매도가격을 결정하고, 만일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의무매도 대상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국영기업 및 사기업체 순서로 공매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공매절차는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에 의해 지명된 위원회가 주관하고, 인도네시아 국가 및 기업 측이 의무주식매도절차에 따라 취득한 주식비율은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번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위 법령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나아가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미얀마 ■

### 미얀마에 대한 전세계적 제재 완화 흐름

미국 정부는 4월 17일 비정부기구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적, 종교적, 교육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미 정부는 미얀마에 일부 투자와 금융서비스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부분에 대한 제재를 대부분 해제한 것입니다.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은 4월 23일 무기수출을 제외한 미얀마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유예기간 동안 미얀마의 개혁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할지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대 미얀마 투자금지, 광물·금속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자산동결,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등이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4월 24일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대부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의 수준에 맞추어 제재의 폭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4월 16일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봅 카 외무장관은 호주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 완화는 최근 아세안과 유럽 각국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1988년 군사정부 이후로 미얀마와 교류를 끊었던 일본이 4월 19일 선진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얀마에 대한 채권을 일부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아사히신문), 그 액수는 3,000억 엔(4조 1,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 이외에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인프라 정비를 위해 6,000억 엔(8조 4,000억 원)을 원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 완화의 흐름은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을 환호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쟁력 있는 인건비 및 천혜의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 중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을 앞다투고 있는 것에 비해, 자신들의 제재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력 확장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 집니다.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의 제재 완화의 이면에는 미얀마가 중국의 동남아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도 자신들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쌓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 국회는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4월 24일에 국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 완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안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태국 ■

###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태국 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태국 정부에 2013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에 대한 국제적 대응 기준을 제정하는 '자금세탁에 관한 금융 조치 실무 팀(FATF)'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리스트에 올렸으며 해외 금융기관들은 태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상세 거래 내역을 요구하기도 하며 수입자들은 대금 결제를 위해 태국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것을 재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태국인들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결국 의회의 손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 유지

태국 정부 및 민간 부분의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상 대표부(USTR)'는 태국을 4년 연속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 최신 해외정보 – 호주 ■

### ACCC, 탄소세 관련 Guideline 공표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서는 탄소세 관련 법의 2012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탄소세 제도의 시행에 기인한 가격 상향 조정을 피할 경우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guideline)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골자는 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호주 인수 분쟁 조정위, 재원 마련 위한 신주 발행시 주의 경고

호주 인수 분쟁 조정위(Takeovers Panel -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있어서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호주 정부 기구)는 지난 3월 회사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도 신주발행으로 회사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신주발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하여 상당한 의결권의 증대가 예상될 경우 신주 인수 확보 전략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제850호 – 필리핀] 필리핀의 프랜차이즈 산업

필리핀 마닐라의 번화가인 그린벨트에 국내 토종 카페 브랜드인 카페띠아모 2호점이 성업 중이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식 브랜드인 불고기브라더스도 필리핀에 안착했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프랜차이즈업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커피 브랜드인 할리스와 베이커리 브랜드인 뚜레쥬르도 필리핀 진출을 마쳤으며 카페베네도 필리핀 진출을 준비 중이다. 소매업으로는 화장품 브랜드인 더 페이스 샵, 스킨 푸드, 에뛰드 하우스, 네이처 리퍼블릭 등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필리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중략)

김혜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제850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제851호 – 미얀마] 외국인 투자 늘어나는 미얀마

'은둔의 나라' 미얀마가 개방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작년 3월 민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의 혁신 조치와 외국의 발 빠른 대응이 교차되고 있다. 작년 11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문을

신호탄으로 대규모 정치범 석방, 영국과 프랑스 외무장관 방문, 일본 경제 사절단 방문, 소수민족 반 군들과의 평화 협상 타결, 아웅산 수치의 4월 보궐선거 순회 유세, 미얀마 정부 대표단의 다보스 회의 참석 등을 보면 알 수 있다...(중략)

양영태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장

- 제851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제852호 – 태국] 아세아 진출의 관문 태국

아세안은 중국 다음으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다. 자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동질성 등 경제 외적 요인에 더해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절실한 우리 기업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이 지역이 우선 진출 대상이다. 종전과 같이 아세안의 특정 국가만을 진출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어느 나라를 통해 아세안으로 접근할지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1997년 채택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번영하며 경쟁력을 갖춘 아세안 경제 지역이 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경제 통합의 최종 목표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 의정서 II’를 채택했다. 그리고 2005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를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중략)

정재형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태국 사무소장

- 제852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제854호 – 인도네시아] 외국인 광산 소유 제한하는 인도네시아

2012년 3월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Mine) 소유 지분 한도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법령(Presidential Decree)을 공포했다. 새 법령에 따라 광산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생산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광산 지분의 49%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

구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대 80%까지 지분 소유가 허용됐다. 다만 생산 개시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최소한 20%의 지분을 처분하면 됐다. 이에 따라 비록 20%의 지분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대 60%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생산 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중략)

## 권용숙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제854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제855호 – 베트남] 노조 설립 활발한 베트남 기업

작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지역노조 및 산업노조를 통해 외국인 투자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베트남 노동법은 노동조합 설립을 지역노조 또는 산업노조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노동법 제153.1조). 즉 회사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회사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노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지역노조 또는 산업노조가 노동조합 임시집행위원회를 설립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한다(노동법 제153.1조). 즉 지역노조 또는 산업노조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설립돼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노동조합을 세워야 하지만(시행령96 제3.1조) 6개월 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상급 노동조합이 회사 근로자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임시집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시행령96 제3.2조, 제4조). 임시집행위원회의 위원은 회사의 재직 근로

자로 구성하되 필요하다면 상급 노동조합은 소속 전임자를 임시집행위원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시행령96 제6.1조)...(중략)

## 정정태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베트남 법인장

- [제855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제856호 – 미얀마] 미얀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미얀마의 개혁 정책에 대한 기사가 연일 현지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4월 1일 실시된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도 구체적인 경제 제재 해제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가능성만 보여주던 미얀마가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 얼굴을 내미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급격한 개방이 줄 미얀마 경제의 충격파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미얀마 경제발전과 외국인 투자 기회에 대한 기대감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지만 미얀마 자체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도 투자를 가로막는 데 한몫했다. 1988년 제정된 미얀마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35% 이상 지분 투자를 하면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유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외국인의 이익배당 송금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임대 받아야만 했고 외국인이 납입한 자본금은 시장 환율과 동떨어진 공식 환율에 의해 표기돼야 했다. 공식 환율은 시장 환율과 크게는 130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왔다...(중략)

##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제856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 [제857호 – 러시아] 러시아 대륙붕 자원 개발, 닫힌 문 다시 열리나

러시아의 대륙붕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은 약 1000억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러시아 지하자원법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하고 러시아 수역에서의 개발 경험이 5년을 초과하는 개발회사(사업자)만 대륙붕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지하자원법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오직 두 개의 국영 회사인 로스네프티와 가스프롬뿐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이들 두 개 회사에만 대륙붕 프로젝트 개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2030 대륙붕 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회사들의 재정 및 기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러시아 정부의 '2030 대륙붕 개발 계획'은 대륙붕 지역에서 2030년까지 4000만~8000만 톤의 석유 및 1900억 m<sup>3</sup>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변호사

- [제857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